

# 세종자이e편한세상

배우자 공동명의 설정절차 및 유의사항

문의 044) 415-1811

<b>1</b>	<b>세종특별자치시청 토지정보과 방문</b>	증여인 (계약자)	공급계약서 원본, 신분증 및 도장
		수증인 (계약자의 배우자)	신분증 및 도장



▣ 세종특별자치시청 토지정보과 (☎Tel. : 044-300-2947~8)  
 위치 : 도로명 ▶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, 1층 / 지번 ▶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26-5, 1층

## 2 증여계약서(지분표시) 작성 후 검인 ▶ 검인된 증여계약서 1부 수령



<b>3</b>	<b>세종자이e편한세상 분양사무소 방문</b>	구비 서류	
		증여인 (계약자)	수증인 (계약자의 배우자)
<p>1. 배우자 공동명의 신청기간                      기간 : 2019. 8. 5 (월) ~ 10 (토), 10 ~ 17시                      상기기간 이후 : 매월 10일 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                      ※ 문의: ☎ 044-415-1811                      업무시간 - 평일 10:00 ~ 17:00                      (중식시간 11:30~13:00, 토/일요일, 공휴일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- 방문 전 일정 및 서류 확인 필수</p> <p>2. 증여인, 수증인 방문 (증여인 대리 불가)</p> <p>3. 구비서류 제출</p> <p>4.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서류 내역 작성</p>		<p>1. 검인된 증여계약서 1부</p> <p>2. 공급계약서 원본</p> <p>3. 가족관계증명서 2부</p> <p>4. 주민등록표등본 2부</p> <p>5. 인감증명서 2부 (매도용)                      ※ 수증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 매도용</p> <p>6. 인감도장, 신분증                      ※ 중도금 대출 신청세대는 연대보증 확인관련 서류 (은행발급)</p>	<p>1. 인감증명서 2부</p> <p>2. 인감도장, 신분증</p> <p>3. 주민등록표등본 1부 (배우자 분리세대 시)</p> <p>※ 대리 방문시                      -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 위임장 (건본주택 비치),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                     대리인 신분증</p>

※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능합니다.  
 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전 제출본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배우자 공동명의 설정진행이 불가합니다.  
 ※ 상기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것으로 차후 변경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, 반드시 사전에 분양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본 아파트는 「주택법」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「주택법」 제64조 제1항 및 「주택법시행령」 제7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날(당첨자발표일)로부터 **일반공급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행위가 금지되며, 특별공급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5년간 전매행위가 금지**됩니다. 단,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73조제4항에 따른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에 가능하며, 상기 물건은 제 2항 제 7호(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)에 의한 명의변경만 가능합니다.

- ▣ 배우자 공동명의설정 절차 시 **증여인(계약자)**은 대리진행이 불가합니다.
- ▣ 배우자 공동명의설정 절차 시 **공급계약서는 내전매동의절차에 의해 당일 수령이 불가**하며, 수령가능일은 별도 통보예정입니다. (약 1개월가량 소요)
- ▣ **도래약정 미납금** (분양대금, 발코나확장대금 등)이 있는 세대는 **배우자 공동명의설정이 불가**합니다.
- ▣ **분양대금의 90% 이상 납부한 경우** 취득으로 간주되어 **배우자 공동명의 설정이 불가**할 수 있습니다.
- ▣ **중도금 대출 승계 불가 시 도래한 중도금액을 상환**하셔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.